(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 스포츠지도사 자격검정 실무위원회 내규(지침)

제정: 2023. 08. 17.

제1조(목적) 이 내규(지침)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스포츠지도사 자격 검정제도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위원회에서 정해진 사항은 해당 종목의 노인스포츠지도사 실기 및 구술시험에 참여하는 관련 당사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른 실기·구술 자격검정계획 및 이를 시행하기 위한 해당 종목의 세부 계획(시험일정, 장소, 시험위원, 출제위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 해당 종목의 실기·구술 자격검정의 심사 항목 등 세부적인 출제 방침
3. 해당 종목의 실기·구술 자격검정의 채점결과 및 합격대상자 확정
4. 그 밖에 해당 종목의 자격검정 운영을 위한 실무적인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 위원 9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과 위원은 위원회의 목적과 활동에 관한 전문 지식과 체육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회장이 위촉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된 위원의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촉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회의소집)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1.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2.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3. 심의 안건, 의결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제 1항의 회의록의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특정 사안에 대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결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서면결의)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

제13조(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자격검정의 응시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자격검정의 응시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② 자격검정의 응시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았거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지급 등)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직위 :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 스포츠지도사 자격검정위원
성명 :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2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	아니오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논문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	아니오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등을 진행 중이다.	예 ( )	아니오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관, 단체,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	아니오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	아니오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직위 :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 스포츠지도사 자격검정 위원

성명 :

상기 본인은 스포츠지도사 자격검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에서의 공정 및 정치적 중립성 준수
2.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3.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6.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7.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8.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9.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서명)